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계보고 시 제출할 서류에 차입금에 관한 자료 추가〉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5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유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이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보고 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차입금의 규모,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¹⁾

현행	개정안
제40조(회계보고) ① ~ ③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1) 대표발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정당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임.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의 회계보고 시 제출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에는 채권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및 차입금의 금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변제기한이나 이자율 등 차입금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입금을 통한 정치자금 운용의 불법성 여부나 탈법적 수단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당의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²⁾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에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채권자의 정보 외에도 차입금의 변제기한, 이자율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명시한 차입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당의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범문 표현에 따르면 차입금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이 정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등 회계보고 전 대상자⁴⁾로

2) 차입의 진정성 및 실질적 대가 여부 판단 불가, 이자율 누락 시 불공정·부당거래 여부 판단의 어려움, 변제기한 누락 시 탈법적 자금운용 수단으로 악용 가능 등

3) 개정안의 제안이유

4)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확대되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문 표현을 “차입금에 관한 자료”에서 “정당의 차입금에 관한 자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할 경우 수입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회계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회계보고 시 차입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게 한다면 정치자금 회계질서의 확립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차입금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에 정당뿐만 아니라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원,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 모든 회계보고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안이유와 같이 정당의 회계보고에 한하여 차입금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려면 개정안 조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6

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